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54
----------	------

발의년월일 : 2025년 09월 16일
발의자 : 윤영희 의원(1명)
찬성자 : 경기문, 곽향기, 김성준,
김지향, 문성호, 박석,
송도호, 윤기섭, 이경숙,
이상우, 이새날, 이숙자,
이원형, 이종태, 황철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픽시(Fixed Gear) 자전거’가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단순한 구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나,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무분별한 이용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만으로는 픽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 및 초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픽시 자전거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교육과 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가. 제동장치 없는 퍽시 자전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마. 퍹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퍹시 자전거 이용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8조)
- 아.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 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퍽시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의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퍽시 자전거 안전한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퍹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 을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퍹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 푹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

거로 운행 노력

제5조(적용범위) 꾹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꽉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시민의 꾹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꾹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꾹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꾹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꾹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추진 등) ① 시장은 꾹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꾹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꾹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꾹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꾹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꾹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꾹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꾹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꾹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6조(튕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교육추진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교통실 보행자전거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추진 중이므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제8조(실태조사) 또한 임의 규정으로 국가기관(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기존 통계 및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참고자료로 '튕시자전거 안전이용 관련 캠페인 추진계획'을 첨부함[붙임]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퍽시자전거 안전이용 및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캠페인 추진계획(보행자전거과-12890호, '25. 9. 10.)

퍽시자전거 안전이용 및 리튬 배터리 안전관리 캠페인 추진계획

보행자전거과장: 송수성 ☎ 2133-2410 보행자전거정책팀장: 장일진 ☎ 2421 담당: 김은선 ☎ 2422

전기 이동장치 배터리 충전 중 화재 발생과 퍽시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를 계기로 시민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퍽시자전거 이용시 안전장비 착용 생활화 및 올바른 이용습관 유도
- 리튬 배터리 충전 및 관리 요령 안내를 통한 화재 · 감전 사고 예방
- 서울시, 자치구, 시민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 밀착 캠페인 전개

□ 추진개요

- 기 간 : 2025년 9월 ~ 10월 중
- 장 소 : 관내 중·고등학교, 학원가, 지하철 역사주변, 한강 및 체육공원 등
- 참 가 : 시, 자치구, 학교, 자전거 민간단체

□ 캠페인 내용

○ 퍽시자전거 이용자제

- 계동장치가 없는 퍽시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불가(자전거 아님 강조)
- 사고발생시 자전거보험 등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
- 퍽시자전거 운행 시 브레이크(앞바퀴 · 뒷바퀴) 장착 의무화
-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단속강화(개조불가 등) 사항 안내

※ 도로교통법 제48조1항(안전운전의무) 위반시 단속 및 미성년자는 보호자 통보



<픽시자전거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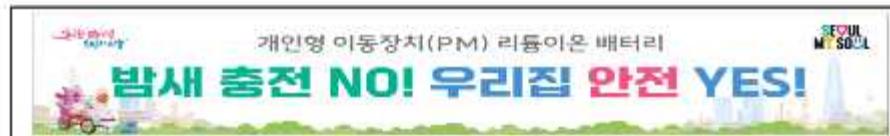
<픽시자전거 현수막(안)>

○ PM(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 올바른 충전방법 및 배터리 관리요령 안내
-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사고 사례 및 대응법 교육(안전교육시)
- 충전 전 점검, 화재 발생시 대피 요령 등 안전수칙 안내



<리튬 배터리 안전관리 리플렛>



<리튬 배터리 안전관리 현수막(안)>

□ 세부 추진계획

서울시 추진

○ 시범추진(2개교) : ****

- 일 시 : *****

- 방 법 : 시, 학교 합동으로 학생 등교시간에 광시자전거 및 PM 리튬 배터리
관련 리플렛 배부 등 현장캠페인

- *****

- 진행일정

시 간	추 진 내 용
*****	*****
*****	*****
*****	*****
*****	*****
*****	*****

- 준비물 : 리플렛 2종 2,000매(광시자전거 1,000, PM배터리 1,000), 현수막 2개

○ 본격추진 :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주요 학원가, 지하철역사 주변, 한강공원 등 자전거 이용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주 2회(1개조 6명)

- 일 시 : '25. 9.19.(금) ~ 10.31.(금) (5주간)

- 참여인력 : 보행자전거과 전직원, 경찰청·자치구·학교 교직원 참여요청
(1개조당 6명 × 10회 = 60명)

- 대상 현황 : *****

추진일정 (예정)	학 교 명	캠페인 시간대	참 석 인 원	
			조 장	조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안전교육 병행

- 학교로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안전교육(*****) 및 시민대상 안전교육시 리플렛 및 홍보물 배부 등 캠페인 실시

자치구 및 민간단체 추진

구 분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사전준비	9월초	<input type="radio"/> 대상지 선정 등 일정협의 <input type="radio"/> 리플렛, 피켓, 현수막 등 인쇄물 제작
캠페인 실시	9월 ~ 10월	<input type="radio"/> 자 치 구 : 등교시간에 학교앞 등 캠페인 실시 <input type="radio"/> 민간단체 :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활동과 연계하여 캠페인 실시
결과보고	10월	<input type="radio"/>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불일 참고)

행정사항

- 자치구 및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캠페인 실시 협조요청
- 대상학교 및 캠페인 장소 선정과 추진방법 협의
- 직원 근무명령 및 조기 현장출근 인정 처리

붙임 1. 캠페인 추진결과 보고서 (양식) 1부.

2. 픽시자전거 리플렛 1부.

3. 화재예방 전단지 1부. 끝.